

의왕시고시 제2011- 호

고 시(안)

1. 의왕(고천택지지구)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
2. 관계도서를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  - 가. 의왕(고천택지지구)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 조서 : 붙임
  - 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 (관보게재 생략)

2011. 12.

의 왕 시 장

**의왕(고천택지지구)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조서(안)**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안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1	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	의왕시 오전동, 왕곡동 일원	503,479.7	감)385.6	503,094.1	-

○ 변경사유

- 의왕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11.10.28)시 고천동 591-1, 591-2, 591-3번지를 정비구역으로 추가 편입 조건부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고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 변경하고자 함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안)

1.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안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(안)

구 분		면 적 ( 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503,479.7	감)385.6	503,094.1	100.0	
주거지역	소 계	467,699.7	감)385.6	467,314.1	92.9	
	제1종 일반주거지역	95,645.0	-	95,645.0	19.0	
	제2종 일반주거지역	13,780.3	-	13,780.3	2.8	
	제3종 일반주거지역	354,578.0	감)385.6	354,192.4	70.4	
	준주거지역	3,696.4	-	3,696.4	0.7	
상업지역	소 계	35,780.0	-	35,780.0	7.1	
	일반상업지역	35,780.0	-	35,780.0	7.1	

○ 변경사유

- 의왕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11.10.28)시 고천동 591-1, 591-2, 591-3번지를 정비구역으로 추가 편입 조건부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고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 변경에 따른 해당토지를 제척 변경하고자 함
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㉓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. 공동건축 규모와 배치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4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5.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